

충청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

344

제출년월일 : 2000. 10. 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제안이유

-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 건축위원회의 기능 및 건축분쟁 조정의 효력을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조문을 정비하기 위함.

주요골자

- 건축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관련조문 정비
 - 충청북도건축위원회 기능 관련조문 정비(안 제5조제2호)
 - . 법 제62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안의 심의 → 삭제
 - 관련 서식정비(안 별지 제7호 서식)
 - . 별지 제7호 서식 건축분쟁조정서 참고란을 “본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” → “본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 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”로 함.

조례안 : 따로붙임

신구조문대비표 : 따로붙임

관계법령발췌 : 따로붙임

충청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호를 삭제한다

별지 제7호서식 건축분쟁조정서 참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

※본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발취

□ 건축법

- 제76조의5 (조정 의 효력) ①조정위원회는 제7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.
-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③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,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
- ④당사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. [개정 99·2·8 법5895]

□ 건축법시행령

제5조(건축위원회)

- ④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·광역시·도·시·군 및 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지방건축위원회를 둔다.
1.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조례(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인 경우에 한한다)의 제정·개정에 관한 사항
 2.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
 3.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(이하 “다중이용건축물”이라 한다)의 구조안전·피난 및 소방에 관한 사항
 - 가. 문화 및 집회시설(전시장 및 동·식물원을 제외한다), 판매 및 영업시설,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
 - 나. 16층이상인 건축물